



www.chosimstudy.co.kr.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81195		
최초 등록일	2018.11.23	최종 등록일	

CHOSIM(초심) 정보공개서



[(주)아이센스티앤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아이센스티앤씨

대표번호	1800-5330	팩스번호	02-803-9197
가맹사업운영부서	가맹사업팀	가맹사업운영부서전화번호	02-858-5789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 길 11, 1205 호 (구로동,에이스 테크노타워 8 차)		
홈페이지	www.chosimstudy.co.kr	대표이메일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내·외국 기업 여부
4. 인수·합병 여부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8. 바로 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가맹사업의 업종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현황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9.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10. 가맹금 예치기관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민원참여'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아이센스티앤씨의“CHOSIM(초심)”)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CHOSIM(초심)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2018년 10월 11일	사업자등록일	2018년 10월 16일
법인등록번호	110111-6891629	사업자등록번호	556-86-01317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대표자	대표번호
가맹본부	(주)아이센스티앤씨	김용민 유지연	1800-5330
특수관계인 (임원)	김용민(공동대표이사) 유지연(공동대표이사) 김완희(감사)	영업표지 CHOSIM (초심)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1, 1205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대표자	대표번호
계열회사	(주)아이센스에프앤씨	아이센스 pc 방 외 1	윤석범	1544-5860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1, 805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법인등록번호	110111-4759043	사업자등록	119-86-50905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대표자	대표번호
계열회사	(주)아이센스푸드	치킨의민족 외 2	황승원, 이수철, 최정길	02-1661-1675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7층 708호(구로동, 에이스트원타워 2차)			
	법인등록번호	110111-6821353	사업자등록	463-88-01208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대표자	대표번호
계열회사	(주)아이센스에프앤비	아이센스리 그 pc 방 외 3	윤석범	1833-4292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1, 804(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법인등록번호	110111-5476092	사업자등록	113-86-88422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CHOSIM(초심)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관련정보	BI
초심 (CHOSIM)	CHOSIM(초심)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출원번호 4020180140876	
		출원번호 4020180178860	

6.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별첨 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8 년	330,651	449,474	-118,822	0	-147,329	-148,822
2019 년	1,247,969	1,954,986	-707,016	7,010,977	-584,247	-588,194
2020 년	2,092,163	1,771,912	320,251	15,516,394	1,046,090	1,027,268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CHOSIM(초심) 가맹사업 외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가.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용민	공동대표이사	2018.10~현재	(주)아이센스티앤씨 가맹사업	시설업 총괄
	유지연	공동대표이사	2018.10~현재	(주)아이센스티앤씨 가맹사업	시설업 총괄
	김완희	감사	2018.10~현재	(주)아이센스티앤씨 가맹사업	감사

8. 바로 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준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0 년 12 월 31 일	2	1	24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아이센스티앤씨	가맹사업 경영	2018.11~현재	CHOSIM(초심) (등록번호:20181195)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센스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16.06~현재	만화카페 발톤(등록번호:20160560)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17.04~현재	아이센스리그PC방 (등록번호:20171088)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0.07~현재	꼬치의품격(등록번호:등록 신청 중)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0.07~현재	낭만스테이(등록번호:등록 신청 중)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에프앤씨	가맹사업 경영	2011.01~현재	아이센스 PC방(등록번호:20130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18.01~현재	아이센스리그PC방 (등록번호: 20181055)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푸드	가맹사업 경영	2018.11~현재	치킨의민족 (등록번호:20181268)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0.01~현재			대배달의시대 (등록번호:20201785)이라는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0.01~현재			크린독피아 (등록번호:20210478)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 영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CHOSIM(초심)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이미지	출원및등록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출원인)	등록 만료일 (사용가능일)
상표 / 서비스표		출원일자	출원번호:	㈜아이센스 에프앤비	2029.10.23
		2018.10.15	4020180140876		
		등록일자	등록번호:		
	2019.10.23	4015353230000			
		출원일자	출원번호:	㈜아이센스 티앤씨	2030.01.10
		2018.12.19	4020180178860		
등록일자		등록번호:			
2020.01.10	4015630120000				
	출원일자	출원번호:	㈜아이센스 티앤씨	출원중	
2019.06.25	4020190097789				
권리 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당사는 위의 지식재산권을 소유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CHOSIM(초심)'과 관련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제일 하단의 상표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CHOSIM(초심)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9년 01월 23일입니다.

2. CHOSIM(초심)의 연혁

CHOSIM(초심)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아이센스티앤씨	CHOSIM (초심)	김용민 유지연 임신섭 이광민	2019년 시작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1, 806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주)아이센스티앤씨	CHOSIM (초심)	김용민 유지연	2019.01.23~ 2021.04.0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1, 806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주)아이센스티앤씨	CHOSIM (초심)	김용민 유지연	2021.04.09~현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1, 1205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 워 8차)

3. CHOSIM(초심)의 업종

CHOSIM(초심)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CHOSIM(초심)	대분류
기타서비스		스터디 카페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CHOSIM(초심)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CHOSIM(초심)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사업 미 개시로 해당 사항 없음			36	36	0	118	115	3
서울				8	8	0	23	21	2
부산				2	2	0	5	5	0
대구				1	1	0	4	4	0
인천				3	3	0	8	8	0
광주				1	1	0	2	2	0
대전				1	1	0	3	3	0
울산				1	1	0	3	3	0
세종				0	0	0	2	2	0
경기				10	10	0	38	37	1
강원				3	3	0	4	4	0
충북				0	0	0	2	2	0
충남				1	1	0	6	6	0
전북				4	4	0	10	10	0
전남				0	0	0	0	0	0
경북				0	0	0	2	2	0
경남				1	1	0	6	6	0
제주				0	0	0	0	0	0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CHOSIM(초심)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CHOSIM(초심)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18년	사업 미 개시로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0	36	0	0	0	36
2020년	36	79	0	0	4	115

6. 기타 가맹사업현황

CHOSIM(초심)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업종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18.12.31	2019.12.31	2020.12.31
계열회사	(주)아이센스에프앤비	Pc방	아이센스리그 PC방	20171088	80/7	123/8	149/8

		기타 서비스	만화카페 벌튼	20160560	52/4	55/4	65/4
		숙박	낭만스테이	20201042	-	-	2/0
㈜아이센스에프앤씨	Pc방	아이센스 PC방	20130100472	340/0	293/0	268/0	
	Pc방	아이센스리그 PC방	20181055	/	5/0	5/0	
㈜아이센스푸드	치킨	치킨의민족	20181268	10/1	93/0	81/0	
	기타외식	대배달의시대	20201785	/	/	0/0	
	반려동물 관련	크린독피아	20210478	/	/	0/0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CHOSIM(초심)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0 년 말 가맹점 수	2020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VAT 미포함)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매출액	면적 3.3㎡ 당	최고 매출액		최저 매출액		
				매출액	면적 3.3㎡ 당	매출액	면적 3.3㎡ 당	
전체	115	103,962	1,980	269,605	3,978	14,567	275	
서울	21	127,173	2,482	269,605	3,978	69,359	1,153	
부산	5	91,697	1,849	122,443	2,060	71,563	1,634	
대구	4	해당없음(5곳 미만)						
인천	8	117,305	2,023	171,943	2,819	75,108	1,556	
광주	2	해당없음(5곳 미만)						
대전	3	해당없음(5곳 미만)						
울산	3	해당없음(5곳 미만)						
세종	2	해당없음(5곳 미만)						
경기	37	88,997	1,718	167,129	3,078	29,946	565	
강원	4	해당없음(5곳 미만)						
충북	2	해당없음(5곳 미만)						
충남	6	105,231	1,902	150,247	2,782	33,374	695	
전북	10	112,697	2,106	183,169	3,522	14,567	275	
전남	0	해당없음(5곳 미만)						

경북	2	해당없음(5곳 미만)						
경남	6	79,623	1,566	105,803	3,306	49,832	831	
제주	0	해당없음(5곳 미만)						

* 상기 자료는 po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 6 개월(180 일)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영업개월수가 6 개월 미만인 가맹점 30 곳은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15 개가 아닌 실제 85 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지역상황, 점주의 노력, 로스쿨, 레시피 준수 정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CHOSIM(초심)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2020 년도의 당사의 CHOSIM(초심)과 관련하여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단	내 용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단위:천원/VAT 미포함)
광고	광고 선전비	2020.01.01~2020.12.31	190,592
합계	-	-	190,592

10.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CHOSIM(초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0 년	115	341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별도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	----	----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아이센스티앤씨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CHOSIM(초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5,5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점주 포함 3인)	3,3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의 대가 2. 양수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2,750,000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 하여 소요되는 소 멸성 비용
교육비	양수 개점 교육비	3,3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나.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5,000,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음 내역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13,800,000	11,050,000
가맹비	5,500,000	2,750,000
교육비	3,300,000	3,300,000
보증금	5,000,000	5,000,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CHOSIM(초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기준면적:165m²/단위:원/VAT 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협력업체	77,000,000	1,540,000	가맹 계약 시 개별 계약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공사설계 및 컨설팅	가맹본부	11,000,000	220,000		
간판	가맹본부	10,208,000	204,160		
설비기기	가맹본부	10,560,000	211,200		

집기	가맹본부	44,000,000	880,000		
기타물품	가맹본부	61,930,000	1,238,600		
초도물품	가맹본부	1,000,000	20,000		
합계	-	215,698,000	4,313,960	-	-

가맹점사업자 인테리어 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당 605,000원(VAT포함)

- ① 위 표의 면적 3.3 ㎡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 ㎡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165㎡, 50 평 기준) 추정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도어,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70%

*상기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CHOSIM(초심)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당사가 조연한 경우라도 입지선정의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의 책임하에 있으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귀하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귀하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영업의 개시가 늦어 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범죄이력이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 세 이상일 것

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인테리어 설비	가설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체결시 별도공급	협력업체
간판	내외부 간판,내부 사인물,파사드		가맹본부
설비기기	공조시스템(50 평 기준 2 대)		가맹본부
집기	의탁자		가맹본부
기타물품	산소공급기, 백색소음기, 키오스크, 주방기기		가맹본부

- *귀하는 지정된 전용상품(원부재료)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지정된 원부재료 품목의 스펙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지급시기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예치 가맹금(계약금)	13,800,000	10,050,000(일시불)	계약 체결 시
	기타 대금의 40%	-	
착수금	기타 대금의 30%	-	공사 착수 전
1 차 중도금	기타 대금의 20%	-	착공 후 15일 전
2 차 중도금	기타 대금의 10%	-	착공 후 22일 전
잔금	-	-	가구 입고 5일 전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본부	매출 5%	매월 5일	후불로 반환 안됨
개정 이후 교육비	수시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교육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30%, 가맹점사업자 측 7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POS 사용대가	해당없음			
통신서비스비	문자발송, 통신, 인터넷 등의 관련 유지비용	가맹본부	월 220,000 내외	개별청구	후불로 반환 안됨
무인시스템	무인시스템(KIOSK) 관련 유지 비용	협력업체	월 110,000 (가맹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유지비 발생)		후불로 반환 안됨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가맹본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VII-1 참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통신서비스비용은 50평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므로 매장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치 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0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 2020 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

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귀하의 점포의 전산 매출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가맹점 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PC에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CHOSIM(초심)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CHOSIM(초심)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3) 당사가 제공한 설비,기기,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고,운영매뉴얼기타 가맹점 운영규칙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 종료 15일 전까지 반환하거나 폐기할 각종 유무형(전산장치에 기록/저장된 자료 포함)의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초심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품목	내역	거래상대방	거래형태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별첨 1 참고>				

- ①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품목의 세부 내용들은(원부재료의 품목 및 제조사 포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는 영업 중에 가맹본부가 별도로 공급하는 품목이 없어,차액가맹금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을 생략합니다.오픈시 공급방법 및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아.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참고하십시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별첨 2 참고>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초심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초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

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사가 직전 사업년도에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나. 당사가 초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에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CHOSIM(초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상품 및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해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또는 알선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카페 형태의 스터디 공간 서비스업	CHOSIM(초심)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만료전 180~90일 사이에 변경된 조건에 대한 통지→가맹점사업자동의 →영업지역 변경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CHOSIM(초심)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입니다. 다만, 갱신시에는 1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건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1항~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조1항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및 용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품질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래처요구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1항~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7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6항

25조 각호
및
31조 1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조2항~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조7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조21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1항2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가맹사업을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 조 2 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5)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CHOSIM(초심)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CHOSIM(초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카페 형태의 스터디 공간 서비스업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CHOSIM(초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심야영업시간대에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조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서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50평기준 1인 이상 유지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매뉴얼 준수및사입 체크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완료	수시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POS, KIOSK 사용 상태점검→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

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의 70% /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 18 조(경업금지 의무) 제 1 항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금오천만원(W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거래처요구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거래처요구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금일백만원(W1,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W1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품질요구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상품 및 용역 이외의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할 경우 적발 즉시 위약벌로금이백만원(W2,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이십만원(W2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금오백만원(W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또는 제 32 조 제 3 호 및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 일 금삼십만원(W3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5항
제 1 항 내지 제 5 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6항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한다.	제33조 제7항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제8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7조 제1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800-5330)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가맹계약 내용 검토 - 인근 가맹점 확인	14 일 이상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2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2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31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2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2 일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D-day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p>지장을주는 경우</p>	<p>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p>		<p>있는경우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 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부담액 을분할 지급 <p>(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p>	<p>부담액은 지급 하지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환수 가능</p>
-----------------	---------------------------	--	--	---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후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후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명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인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정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CHOSIM(초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신규교육	운영, 상품 교육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가맹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필수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상기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나. 개정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CHOSIM(초심)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정 전 교육	2일	3,300,0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실비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협의	실비	
재교육	개별협의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필수)및기타인원(협의)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끝

별첨1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표

품목	내역	공급 시기	품질기준(규격)	거래상대방	거래 형태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실내인테리어	오픈시	실측		권장		실내인테리어
간판 및 실내 외사인물	오픈전	실측	가맹본부	권장	○	간판 및 실내 외사인물
책상 / 의자	오픈전	실측 /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책상 / 의자
카페존책상	오픈전					카페존책상
시디즈의자	오픈전					시디즈의자
사물함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사물함
에어컨	오픈전	실측	가맹본부	권장	○	에어컨
백색소음기	오픈전	실측	가맹본부	권장	○	백색소음기
산소발생기	오픈전	실측	가맹본부	권장	○	산소발생기
키오스크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키오스크
스탠드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스탠드
락장치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락장치
음료냉장고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음료냉장고
얼음스쿱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얼음스쿱
스쿱통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스쿱통
휴지통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휴지통
PC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PC
우산포장기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우산포장기
커피머신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커피머신
그외 물품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그외 물품
소화기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소화기
가습기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가습기
독서대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독서대
방석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방석
무릎담요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무릎담요
명함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명함
배너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배너
포스트잇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포스트잇
사은품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사은품

볼펜	오픈전	공산품	가맹본부	권장	○	볼펜
허브티-페퍼 민트	오픈후	공산품	다통몰	권장	X	허브티-페퍼 민트
허브티-케모 마일	오픈후	공산품	다통몰	권장	X	허브티-케모 마일
허브티-레몬 밤	오픈후	공산품	다통몰	권장	X	허브티-레몬 밤
딸기스무디	오픈후	공산품	다통몰	권장	X	딸기스무디
자몽스무디	오픈후	공산품	다통몰	권장	X	자몽스무디
원두	오픈후	공산품	PTC글로벌	권장	X	원두
원두_분쇄_예 가체프	오픈후	공산품	네이버	권장	X	원두_분쇄_예 가체프
원두_분쇄_슈 프리모	오픈후	공산품	네이버	권장	X	원두_분쇄_슈 프리모
핸드타올	오픈후	공산품	다통몰	권장	X	핸드타올
탄산수	오픈후	공산품	다통몰	권장	X	탄산수
종이컵	오픈후	공산품	다통몰	권장	X	종이컵

별첨2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	단위	공급가격(단위:원)		구분
			상한	하한	
1	원두	ea	105,600	105,600	PTC글로벌
2	종이컵	ea	40,800	40,800	다통물
3	탄산수	ea	27,800	27,800	다통물
4	딸기스무디	ea	27,720	27,720	다통물
5	자몽스무디	ea	27,720	27,720	다통물
6	허브티-페퍼민트	ea	25,740	25,740	다통물

*해당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2020 년의공급 가격이며,해당 품목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현재 공급되는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가격의 상·하한 기재시,일부 가맹본부 외 업체가 공급한 품목들은 2020 년에 가맹점에 공급한 내역이 없거나,공급가격의 상·하한 산정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할 수 없어,기재를 생략하여 총 11 개 품목 중 6 개의 품목을 기재하였습니다.

<별첨 3 재무상태표>

2019년, 2020년

재무상태표

제 3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2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센스티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2,037,197,144		1,198,236,832
(1) 당 좌 자 산		2,037,197,144		1,198,236,832
보 통 예 금		841,472,771		967,203,662
정 기 예 적 금		10,000,000		10,000,000
외 상 매 출 금	1,033,001,660			
대 손 충 당 금	10,330,016	1,022,671,636		
공 사 미 수 금	129,292,263		206,223,610	
대 손 충 당 금	1,292,922	127,999,331		206,223,610
단 기 대 여 금		0		16,000,000
미 수 금		400		0
선 급 금		36,063,107		9,771,010
선 납 세 금		0		38,660
(2) 재 자 산		0		0
II. 비 유 동 자 산		64,966,747		49,732,247
(1) 투 자 자 산		32,160,764		42,838,866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32,160,764		42,838,866
(2) 유 형 자 산		7,568,898		3,306,662
비 품	8,864,644		3,440,908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306,646	7,568,898	134,266	3,306,662
(3) 무 형 자 산		8,266,096		3,686,740
특 허 권		8,266,096		3,686,74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6,990,000		0
기 타 보 증 금		6,990,000		0
자 산 총 계		2,092,162,891		1,247,969,079
부 채				
I. 유 동 부 채		1,771,911,630		1,964,986,039
외 상 매 입 금		412,149,421		621,096,906
미 지 급 금		72,901,694		69,106,834
예 수 금		11,029,833		12,949,480
부 가 세 예 수 금		61,466,490		0
선 수 금		843,620,000		962,779,487
단 기 차 입 금		300,000,000		360,000,000
미 지 급 세 금		63,646,460		34,391,044
미 지 급 비 용		27,199,642		14,663,288
II. 비 유 동 부 채		0		0
퇴 직 연 금 충 당 부 채	120,764,687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120,764,687	0		0
부 채 총 계		1,771,911,630		1,964,986,039
자 본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센스티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기	
	금 액		금 액	
I. 자 본 금		30,000,000		30,000,000
자 본 금		30,000,000		30,000,00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0
V. 이 익 잉 여 금		290,261,361		-737,016,960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90,261,361		-737,016,960
(당 기 순 이 익)				
당기 : 1,027,266,321 원				
전기 : -688,194,483 원				
자 본 총 계		320,261,361		-707,016,96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092,162,891		1,247,969,079

2018년, 2019년

재무상태표

제 2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센스티앤씨

(단위 : 원)

과목	제2(당)기		제1(전)기	
	금액		금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1,198,236,832		330,651,945
(1) 당 파 자 산		1,198,236,832		269,905,595
보 통 예 금		957,203,662		253,639,771
정 기 예 . 적 금		10,000,000		0
공 사 미 수 금		206,223,510		0
단 기 대 여 금		15,000,000		0
미 수 금		0		10,929,096
선 선 금		9,771,010		5,336,728
선 납 세 금		38,650		0
(2) 재 고 자 산		0		60,746,350
상 품		0		60,746,350
II. 비 유 동 자 산		49,732,247		0
(1) 무 자 자 산		42,838,855		0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42,838,855		0
(2) 유 형 자 산		3,306,652		0
비 품	3,440,908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34,256	3,306,652		
(3) 무 형 자 산		3,586,740		0
특 허 권		3,586,74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0
자 산 총 계		1,247,969,079		330,651,945
부 채				
I. 유 동 부 채		1,954,986,039		449,474,422
외 상 매 입 금		521,096,906		43,963,562
미 지 금		69,105,834		24,771,240
예 수 금		12,949,480		2,591,620
선 수 금		952,779,487		178,148,000
단 기 차 입 금		350,000,000		200,000,000
미 지 금 세 금		34,391,044		0
미 지 금 비 용		14,663,288		0
II.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1,954,986,039		449,474,422
자 본				
I. 자 본 금		30,000,000		30,000,000
자 본		30,000,000		30,000,00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0
V. 결 산		737,016,960		148,822,477

재무상태표

제 2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센스티앤씨

(단위 : 원)

과목	제2(당)기		제1(전)기	
	금액		금액	
미 처 리 결 손 금 (당 기 손 손 실)		737,016,960		148,822,477
당기 : 588,194,483 원 전기 : 148,822,477 원				
자 본 총 계		-707,016,960		-118,822,47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47,969,079		330,651,945

< 별첨 4 손익계산서 >

2019년, 2020년 손익계산서

제 3(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센스티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 3 (당) 기		제 2 (전) 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15,616,394,390		7,010,977,914
상품 매출	128,745,149		23,297,717	
공사수입금	0		6,948,734,318	
컨설팅매출	307,663,879		35,201,338	
서비스매출	15,078,799,624		3,744,641	
오픈마켓매출	4,185,838		0	
II. 매출원가		12,743,109,428		6,606,870,166
상품매출원가		12,743,109,428		6,606,870,166
기초상품재고액	0		60,746,350	
당기상품매입액	12,743,109,428		6,446,123,816	
기말상품재고액	0		0	
III. 매출총이익		2,773,284,962		504,107,748
IV. 판매비와관리비		1,727,196,013		1,088,354,821
임원급여	0		105,488,930	
직원급여	908,543,119		444,662,754	
잡급여	0		320,000	
퇴직급여	11,363,129		0	
퇴직보험금	120,764,887		0	
복리후생비	23,798,991		23,460,902	
여객교통비	5,368,890		3,935,200	
접대비	6,822,900		4,989,682	
통신비	2,756,039		1,300,654	
세금과공과금	27,093,450		16,609,680	
감가상각비	1,171,390		134,266	
보험료	38,226,103		4,383,520	
차량유지비	5,625,750		0	
운반비	68,273		0	
교육훈련비	16,210,910		17,071,110	
포서인쇄비	28,102,271		6,910,909	
소모품비	4,984,059		4,885,446	
지급수수료	59,992,871		28,694,151	
광고선전비	190,691,931		312,041,682	
대손상각비	11,622,937		0	
건물관리비	0		150,000	
외주비	123,114,499		67,099,931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센스티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 3 (당) 기		제 2 (전) 기	
	금	액	금	액
무형고정자산상각	1,093,625		573,280	
출장경비	80,708,816		55,682,432	
재료비	0		162,422	
운영지원비	63,190,874		0	
V. 영업외이익		1,046,089,949		-584,247,073
VI. 영업외수익		51,710,496		10,715,900
이자수익	1,638,598		293,755	
고용지원금	49,129,030		5,153,210	
잡이익	1,042,868		5,268,935	
VII. 영업외비용		16,871,484		14,663,310
이자비용	16,742,740		14,663,288	
잡손실	128,744		22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1,080,928,961		-588,194,483
IX. 법인세등		53,660,640		0
법인세등	53,660,640		0	
X. 당기순이익		1,027,268,321		-588,194,483

2018년, 2019년

손익계산서

제 2(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전)기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센스티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2(당)기		제1(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7,010,977,914		0
상품 매출	23,297,717		0	
공사수입금	6,948,734,318		0	
컨설팅매출	35,201,338		0	
서비스매출	3,744,541		0	
II. 매출원가		6,506,870,166		0
상품매출원가		6,506,870,166		0
기초상품재고액	60,746,350		0	
당기상품매입액	6,446,123,816		60,746,350	
기말상품재고액	0		60,746,350	
III. 매출총이익		504,107,748		0
IV. 판매비와관리비		1,086,354,821		147,329,423
임원급여	105,486,930		22,580,610	
직원급여	444,662,754		37,222,340	
잡금	320,000		0	
복리후생비	23,460,902		609,700	
여비교통비	3,935,200		0	
접대비	4,989,682		0	
통신비	1,300,554		12,816	
세금과공과금	16,509,680		923,500	
감가상각비	134,256		0	
보험료	4,383,520		320,660	
교육훈련비	17,071,110		0	
도서인쇄비	6,910,909		451,351	
소모품비	4,885,446		160,354	
지급수수료	28,594,151		14,215,519	
광고선전비	312,041,682		63,273,245	
건물관리비	150,000		0	
외주비	57,099,931		5,782,030	
무형고정자산상각	573,260		0	
사용경비	55,682,432		1,687,388	
재료비	162,422		0	
V. 영업손실		584,947,073		147,329,423
VI. 영업외수익		10,715,900		6,946
이자수익	293,755		6,924	

손익계산서

제 2(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전)기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센스티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2(당)기		제1(전)기	
	금	액	금	액
고용지원금	5,153,210		0	
감이익	5,268,935		22	
VII. 영업외비용		14,668,310		1,500,000
이자비용	14,663,288		0	
잡손실	22		1,500,000	
VIII. 법인세차감전손실		588,194,483		148,822,477
IX. 법인세비용		0		0
X. 당기순손실		588,194,483		148,822,477